

형사소송법(7급)

(과목코드 : 133)

2024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 | |
|--|--|
| 1. 피고인 갑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론종결 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선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②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③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더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3.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 ④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
| 2.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p>ㄱ.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ㄴ. 체포·구속인접견부 ㄷ.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ㄹ.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ㅁ. 군법회의판결사본</p></div> | 4.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

5.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ㄷ.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ㄹ.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처리부의 현존’은 공문서인 형사민원 처리부의 기재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6.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②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자기 휴대폰을 고의로 파손한 때
 - ③ 피고인이 증인의 친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 ④ 피고인이 상습절도의 죄를 범한 때
7. 다음 중 약식재판과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 기준은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약식절차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8.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에 실시한다.
 - ②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9. 다음 중 수사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은 수사의 조건이다.
 - ②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다.
 - ③ 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의 일종이다.
10.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
 - ②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의 확정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④ 공소제기 후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군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하는 것이다.
- ④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12.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제시 없이 구속할 수도 있다. 다만,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공소장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그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13.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 ③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14.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 및 그 대리인이 모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피고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하나 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방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 동의의 효력이 있다.
- ④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5.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 ㄴ.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ㄷ.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 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 ㄹ.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정식의 증거조사 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였다면,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별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성폭력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8. 다음 사례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A가 압수영장 집행 후 지체없이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 ② 수사관 B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경우
- ③ 검사 C가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한 경우
- ④ 검사 D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

19.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 ② 피고인 甲의 A사건은 지방법원본원 항소부에, 甲의 B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 甲은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
 - ③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20. 다음 중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부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 채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다.
 - ②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 ③ 항고로 다툴 수 있다.
 - ④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상소로 다투 수 있다.
21.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더라도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③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 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도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된다.

23.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는 법원의 재량이다.
 - ②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법원은 그 수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일부 신청에 대하여 기각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피해자 진술을 신청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4.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